「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(음식물쓰레기)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(3년)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: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·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
·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 (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·운영)

·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3조, 제16조

·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9조

2) 필요성

·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관리·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상시·지속적 사무로서, 직영 운영에 비해 민간 전문업체의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·능률성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.

· 주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민간 위탁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, 사업계획·목표달성도·서비스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지도·점검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등)

1) 시 설 명: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

2) 위　　치: 경북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-6 (구미하수처리장 내)

3) 처리용량: 95톤/일

4) 가 동 일: 2006. 1.부터

5) 처리방식: 전처리 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

6) 주요시설

구분	연면적(㎡)	주요시설	사 용 용 도
계	746.72		
지하1층	125.19	저장조	음폐수 저장조
지상1층	576	공장동	사료화 시설 운영
지상1층	45.53	사무실	사무실

라. 위탁기간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간)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2,459백만원 ※ 산출근거: 2027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름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7년	2028년	2029년	비 고
운영비	2,459	2,459	2,459	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1) 선정방법: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

2) 평가내용: 전문성, 기술력, 동종시설 운영실적 등 종합심사

3) 평가방법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사. 적정성 검토결과: 적정 ※ 2026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아. 성과평가 결과, 성과보고서 및 감사 결과(재위탁, 재계약): 적정

4. 부서의견

가.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6. 12. 31.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업체 선정이 필요함.

나. 재정력, 전문성, 기술력, 동종시설 운영실적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폐기물관리법」제62조

2)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」제14조

3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13조,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,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'탁월' 등급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시설 운영을 위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성과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유지보수계획 이행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, 처리비용의 적정성 및 악취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